



해외 경쟁정책 동향

미국

독일 화학품 제조업자 Hoechst, 모노크로로 초산의 국제카르텔 참가에 대한 유죄인정으로 벌금 1,200만 달러 지불에 동의

법무부는 금일 독일에 본사를 둔 국제적 화학품 international chemical conglomerate Hoechst Aktiengesellschaft가 의약품, 제초제, 플라스틱 첨가물 등의 산업용 및 소비자 대상 제품의 제조에 이용되는 공업화학품의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공모에의 참가에 대한 유죄답변으로 벌금 1,2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상품인 화학품 모노크로로 초산(monochloroacetic acid, MCAA)의 미국에 대한 연간 매출액은 약 5,000만 달러이다.

금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1개 소인의 중죄사안에서 Hoechst는 1995년 9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사이에 미국 및 그 외의 지역에서 판매된 모노크로로 초산의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점유율을 할당

한 것이 밝혀졌다.

Hoechst는 본 건 공모에의 참가에 대해 유죄답변을 한 세 번째 기업이 되었다. Hoechst의 답변협정-법원의 승인을 요한다-에 있어서 Hoechst는 벌금 1,200만 달러를 자불함과 더불어 모노크로로 초산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계속중인 연방심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2001년 6월, 네덜란드의 대규모 화학품 제조업자 Akzo Nobel Chemicals BV가 본 건 공모에의 참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200만 달러 명령받았다. 2002년 3월에는 프랑스의 Elf Atochem이 본 건 공모에의 참가에 있어서 유죄의 답변을 하여 벌금 500만 달러를 부과받았다.

R. Hewitt Pate 반트러스트국장 임시대행은 「반트러스트국은 미국 기업 이든 외국 기업이든 미국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해를 입힌 모든 기업을 특정(特定)하여 소추한다는 반독점국의 공약을 증명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Hoechst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동 임원 및 종업원을 통해 모노크로로 초산 제조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멸시켜 소추되었다.

미국 및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 판매된 모노크로로 초산의 가격 및 시장점유율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회합·회담에 참가했다.

이러한 회합·회담을 통해 미국 및 그 밖의 지역에서 판매된 모노크로로 초산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또한 가격을 인상·유지했다.

동 회합·회담을 통해서 미국 및 그 밖의 지역에서 판매된 모노크로로 초산의 시장점유율을 주요 모노크로로 초산 제조업자 사이에 배분했다.

합의에 따라서 가격을 고지하고, 가격의 견적을 제시했다. 또한, 합의한 가격 및 시장점유율의 준수를 감시·실행하기 위해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판매된 모노크로로 초산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다.

James M. Griffin 반트러스트국 차장(형사집행담당)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유죄인정에 대한 Hoechst의 결정은 국제카르텔에 대한 반트러스트국의 강력한 집행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Hoechst에 대한 소추가 셔먼법 제1조에 의해 제기된 경우 동 조에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고액



은 1,000만 달러이다.
위반행위에 의해 생긴 이익의 2배 액 또는 위반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2배액 중 법정 최고액인 1,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의 2배액 또는 손해의 2배액까지 과징금의 상한액을 인상할 수 있다.

금일 공표된 소추는 반트러스트국 샌프란시스코 사업소 및 샌프란시스코 연방사무국(FBI)에 의해 계속중인 수사에 의거하여 초래된 것이다.

2003. 2. 6. 미국 법무부 발표문
(『월간 공정취언』 2003. 3월호 참조)

FTC 활동보고서 발간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서 조제약, 휘발유, “DO Not Call”, 기망적인 임대 및 전자상거래를 2002년도에 소비자피해 관련 이슈로 꼽았다. 이 보고서는 최근 12개월 동안의 FTC의 경쟁정책과 소비자보호활동 등에 관한 백서라고 할 수 있다. 2002~2003 이슈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건: 조제약
브랜드가 없는 저렴한 대체약품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반경쟁적인 시장지배력 남용의 정도에 관한 검토, 대체약품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브랜드 의약품 제조사들에 대한 소송

및 대체항암제 2종류와 항우울증 판매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사건들을 해결하였다.

- 에너지: 가솔린

대기오염방지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로 하여금 가솔린 규제를 강화하도록 조종하여,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매년 수백만 달러의 연료비를 더 지불하도록 한 Unocal사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개인보호: “Do Not Call”

텔레마케팅 판매법을 개정하여 텔레마케팅 통화를 거부한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 내의 Do Not Call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재정: 기망적인 임대

Associates First Capital Corporation사와 Associates Corporation of North America의 조직적인 기망행위와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사건을 해결하고, 이 회사들로 하여금 215백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는 FTC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소비자분쟁해결 사례이다.

- 전자상거래: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접근법의 단일화

주(州) 규제들이 신규인터넷 경쟁

자들의 시장진입에 적절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한편, 이 분석결과를 인터넷 거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각 기관들과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 T/F를 창설하였다. 또한 각 산업분야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잠재적인 반경쟁적 진입장벽들을 분석하기 위해 3일간의 워크샵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 경쟁법의 집행

이 보고서에는 2002년 한 해 동안 FTC에서 총 31건의 경쟁법 집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3건의 행정소송, 4건의 예비적 금지명령소송, 1건의 임시제 한명령소송, 그리고 19건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19건의 합의 중에서 10건은 기업결합 사건이고 9건은 기타 반경쟁행위 사건이다. 이 밖에 FTC는 5건의 기업결합 사건을 더 조사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기업결합 협상이 도중에 무산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FTC는 이러한 법집행 이외에도 수많은 조치를 취하였다. 다양한 시장들과 영업활동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경쟁법과 다른 법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분야들을 연구했으며,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였고, 조사절차 등 각종 절차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꾀하였다 고 밝히고 있다.

• 기업결합 업무

기업결합의 감소추세와 하트-스코트-로디노법(Hart-Scott-Rodino Act)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FTC의 기업결합 업무는 2002년에 두드러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FTC는 보건(Cytec/Digene, Amgen/Immunex, Baxter/Wyeth, Quest/Unilab), 에너지 및 식품업(Wal-Mart/Super-mercados Amigo, Kroger/Raley's, Nestle/Dreyer's, Vlasic/Claussen) 등 주요 산업에서 기업결합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 기타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동안 FTC는 59건의 신규사건을 다루었다. 이 중에는 Rambus 및 Unocal 사건과 같은 전형적이며 기본적인 사건도 있었으며, American Institute for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and Artistic Works 또는 National Academy of Arbitrators를 포함한 전문단체에 관한 사건도 있었다. 또한 주(州) 위원회와 관련된 사건도 있었으며, 경쟁법의 적용제외 또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들도 있었다.

■ 소비자보호

FTC의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해, 보고서는 FTC가 ID절도, 통신판매에 있어서 사기행위, 인터넷 사기 및 신용정보 등 소비자문제의 주요 현안 이

슈들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FTC는 관련사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소비자감시제도를 시행하여 백만 건이 넘는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650여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서핑을 통해 온라인 사기와 기망행위 등을 적발하는 동시에, 소비자보호정책 개발을 위한 워크샵, 공청회 및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다.

■ 국제협력

국경을 넘는 반경쟁적 행위와 기망행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FTC는 외국의 경쟁당국들과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FTC는 유럽위원회 및 캐나다 경쟁국과 Bayer/Aventis CropScience 기업결합에 관한 영향분석을 함께 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FTC는 Carnival과 Royal Caribbean사의 매각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및 영국 경쟁당국과도 공동작업을 벌인 바 있다.

FTC는 보다 긴밀한 국제적인 공조를 위해 다양한 다자간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01년에는 미 연방법무부를 비롯한 16개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불과했으나,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집행하고 사건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세계 경쟁당국간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국제적인 경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는데, 현재 회원은 77개

국 76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또한 FTC는 OECD에 참석하여 기업결합 절차의 단일화, 규제개선 및 무역과 경쟁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관해서 조사·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3. 4. 7. 연방거래위원회

FTC 경쟁국, 기업결합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연방거래위원회(FTC) 경쟁국장인 Joe Simons는 기업결합 개선을 위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기업결합을 위한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FTC의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 제정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작년에 개최된 전국 규모의 워크샵이 논의되었던 이슈들을 정리하여 설명한 것이다. FTC 경쟁국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최근의 기업결합 사례들과 장래 발생 가능성 있는 사례들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업결합분쟁해결 협상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 ① 매각할 자산
- ② 인수할 구매자
- ③ 매각협정
- ④ 위원회의 추가명령 규정
- ⑤ 자산의 분리 또는/및 유지명령
- ⑥ 매각신청
- ⑦ 시기



FTC 경쟁국은 기업결합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된 이 가이드라인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2003. 4. 2. 연방거래위원회

EU

열 안정제와 modifier 및 가공조제 제조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에 관한 성명 : 현장조사에 관한 국제협력

유럽위원회 경쟁담당대변인(spokes person)은 press inquiries에 따라 관계회원국 공무원의 지지를 받은 다수의 유럽회원 조사관이 2003년 2월 12일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및 영국에 소재하는 14개 유럽기업의 사업소에서 열 안정제(heat stabilisers)와 modifier(impact modifiers) 및 가공조제(processing aids)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인정했다.

즉, 열 안정제(heat stabilisers)와 modifier(impact modifiers) 및 가공조제(processing aids)에 관한 것이다.

본 건 심사의 목적은 이러한 제품의 가격결정 및 시장분할에 관한 카르텔 합의 및 관련 위반행위의 증거 유무를

조사하여 확실히 알아내는 것이다.

열 안정제는 수지(樹脂)를 열분해로부터 보호하고, 최종 PVC(폴리염화비닐) 제품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이다. 열 안정제는 많은 樹脂 시스템에 이용되지만 그 대부분은 PVC에 이용된다. 열 안정제는 음료수의 송수관, 창틀, 식품포장 등에도 이용된다.

modifiers 및 가공조제는 일련의 플라스틱 첨가제(plastic additives)의 일종이다. modifier는 최종제품의 내압성을 높이기 위해 플라스틱에 첨가시킨다. 경질 PVC는 modifier가 타겟으로 하는 최대 시장의 첫 번째이다. 가공조제는 PVC의 가공성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시키는 물질이다.

본 건 심사는 미국, 일본 및 캐나다의 반트러스트당국에 의해 동시에 실시되었다. 특히 유럽위원회, 미국법무부,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및 캐나다 경쟁당국은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이러한 2개의 카르텔에 대한 현장조사에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조정했다.

국제협력은 반카르텔 정책 분야에 있어서 유럽위원회의 우선 분야이다. 금일 경쟁에 관한 사안은 점점 글로벌화 되어 가고, 기업은 그 비즈니스 전략과 함께 개별 국가와 EU 역내를 사실상 크게 앞서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금일 다루고 있는 카르텔의 대부분은 국제적인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EU가 세계에서 경쟁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쟁정책이 책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조사는 협의를 받고 있는 카르텔에 대한 심사의 예비적인 단계이다. 유럽위원회가 이와 같은 현장조사를 행한다고 하는 사실은 당해 기업이 반경쟁적 행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심사 자체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도 아니다. 유럽위원회는 방어권, 특히 기업이 반트러스트 절차에 있어서 청문(심리)을 받을 권리를 존중한다.

카르텔에 대한 심사에는 엄밀한 종료기한은 없다. 심사기간은 주로 각각의 사안의 복잡함, 방어권의 행사 및 유럽위원회의 의견 협의, 그 밖의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

2003. 2. 13. 유럽위원회 발표문

(『월간 공정취인』 2003. 3월호 참조)

원양해운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에 관한 성명

유럽위원회 경쟁담당대변인(spokes person)은 press inquiries에 따라 유럽위원회의 조사관이 2003년 2월 19일 EEA 모든 나라에 소재하는 다수의 원양해운 텁커 운항사업자의 사업소에 있어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유럽위원회의 공무원은 관계회원국의 공무원의 지원을 받았다. 현장조사의 실시는 EFTA 감시당국(EFTA

Surveillance Authority)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실시되었다. EFTA 감시 당국은 EEA 협정 규정에 따라 EFTA 모든 나라에 소재하는 기업에 있어서 실시되는 현장조사에 대해 책임을지고 있다.

본 건 조사의 목적은 원양해운 뱅커 운항사업에 있어서 카르텔 합의 및 관련 위반행위의 증거 유무를 확실히 알 아내는 것이다.

현장조사는 협의를 받고 있는 카르텔에 대한 조사의 예비적인 단계이다. 유럽위원회가 이와 같은 현장조사를 한다는 사실은 당해 기업이 반경쟁적 행위를 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조사 자체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도 아니다. 유럽위원회는 기업이 반트러스트 절차에 있어서 청문(심리)을 받을 권리를 존중한다.

마지막으로 카르텔에 대한 조사에는 엄밀한 종료기한은 없다. 조사기한은 주로 각각의 사안에 복잡함, 방어권의 행사 및 유럽위원회에 의한 협의, 그 밖의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

2003. 2. 19. 유럽위원회 발표문
(『월간 공정취인』 2003. 3월호 참조)

유럽위원회, 프랑스 통신법에서 동등한 취급 요구

2003년 4월 8일 유럽위원회는 케이블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프랑스 통신법상의 규정이 EU의 “케이

블” 지침과 “완전경쟁”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프랑스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 두 가지 지침은 케이블 사업자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서비스 규정에 관한 제약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케이블 네트워크는 현재 TV 프로그램 전송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1995년 제정된 “케이블” 지침과 1996년에 제정된 “완전경쟁” 지침은 다른 통신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자에게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 지침의 목적 중의 하나는 통신서비스 영역에서 설비(infrastructure)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규제와 관련하여, “케이블” 지침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가 케이블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되든지 공중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든지에 관계없이 인가절차는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위원회는 프랑스가 케이블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통신서비스에 대해 별개의 규제를 함으로써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첫째로, 케이블 사업자에 의한 전화서비스 규정에서는 관련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단체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인터넷 접속과 같은 다른 통신서비스 규정에서는 케이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통신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요구조건들은 케이블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업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핸디캡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어느 케이블 사업자의 전화서비스 인가를 거절한 사례가 있다.

또한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다른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설비를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공공설비 이용료의 상한이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핸디캡들은 케이블 네트워크가 통신서비스 영역에서 기반설비로서 충분히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EU위원회는 프랑스 멀티서비스 네트워크 협회가 지난 2001년 10월에 제소를 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었다. 그 결과 EU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그와 같은 법규정들을 EU법에 맞게 수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채택하게 되었다.

2003. 4. 9. 유럽위원회

독일

연방카르텔청, 국제 카르텔 컨퍼런스 개최

연방카르텔청은 2003년 5월 18일



에서 20일까지 제11회 국제 카르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컨퍼런스는 본(Bonn)에 위치한 예전의 독일 의사당에서 열린다. 본에서 카르텔 컨퍼런스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카르텔청에서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는 1982년에 최초로 베를린에서 개최된 이후, 전세계 경쟁법·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 컨퍼런스는 가장 명성 있는 경쟁정책의 토론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에는 “갈림길에 선 경쟁정책? - 경쟁법상 규제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Wernhard Möschel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된다. 러시아 독점금지 및 기업지원부장관인 Iliya Yuzhanov, 유럽연합 제1심 법원장인 Bo Vesterdorf, 전직 독일 연방경제부장관인 Otto Graf Lambsdorff 등이 발표하고, 각국 경쟁당국의 기관장들이 참여한다. 경쟁정책에 있어서 국제적인 합의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OECD, WTO 또는 국제 경쟁 네트워크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가 어느 정도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서 18일에는 본 시장인 Bärbel Dieckmann의 인사말에 이어, 경제·노동부장관인 Wolfgang Clement, 유럽위원회 위원인 Mario Monti 교수, 그리고 독일우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Klaus Zumwinkel의 연설이 행해진다.

컨퍼런스 첫째날인 19일에는 “기업의 자유와 경쟁의 보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이치 은행 대표이사인 Josef Ackermann, 루르가스 주식회사의 Burkhard Bergmann, 그리고 BMW사의 영업·마케팅 이사인 Michael Ganal씨가 발표를 한다. 덴마크 경쟁당국의 사무처장인 Finn Lauritzen과 미국 연방법무부

독점국장 권한대행인 R. Hewitt Pate도 참여하며, 사회는 독일 Phoenix TV방송사의 Bodo Hauser씨가 맡는다. 여기서는 경쟁당국의 권한이 어느 정도일 수 있는지의 문제가 다루어진다.

둘째날에는 “글로벌화된 시장경제의 질서요인으로서의 경쟁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Wernhard Möschel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된다. 러시아 독점금지 및 기업지원부장관인 Iliya Yuzhanov, 유럽연합 제1심 법원장인 Bo Vesterdorf, 전직 독일 연방경제부장관인 Otto Graf Lambsdorff 등이 발표하고, 각국 경쟁당국의 기관장들이 참여한다. 경쟁정책에 있어서 국제적인 합의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OECD, WTO 또는 국제 경쟁 네트워크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가 어느 정도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2003. 4. 8. 연방카르텔청

일본

공정위, 내각부로 조직 이관

지난 4월 2일 총무성의 외국(外局)에 속해 있던 공정거래위원회를 내각부의 외국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내각부의 외국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률은 4월 9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국회에서의 심의상황을 살펴보면, 3월 19일에는 중의원(衆議院)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안 이유 설명이 있었고, 26일에는 질의 및 채택결의가 있었으며, 다음날인 27일에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같은 날에 참의원(參議院)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이유가 있었으며, 4월 1일에 질의 및 채택결의가 있었고, 다음날인 2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채택되었다.

이 법률로 인해, 독점금지법, 국가행정조직법, 내각부설치법 및 총무성 설치법 등이 개정되었다. 동 법률은 독점금지법의 두 가지 점에서 개정되었다. 하나는 종래 국가행정조직법의 규정에 근거해 설치된 공정거래위원회를 내각부설치법의 규정에 근거해 설치된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종래 총무대신이 관할하던 것을 내각총리대신이 관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제27조). 둘째는 예전에는 국가행정조직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국에 조직되어 있는 관방 및 국의 설치, 광장사무의 범위 및 내부조직에 대해 내각부설치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다(제35조).

2003. 4. 2. 공정거래위원회

폴리프로필렌 제조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폴리프로필렌 제조업자 3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제48조의2(과징금의 납부명령)에 의거해 과징금을 6월 2일 까지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일본폴리화학 주식회사(이하 '일본 폴리화학') 외 2사 및 다른 사업자 4사를 포함한 7사(이하 '7사')는 평소 각 사의 영업부장급들의 회합(이하 '부장회')을 개최하여 폴리프로필렌 판매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였다. 이들은 원료인 나프타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가격의 인상에 대해 검토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나프타 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폴리프로필렌의 가격을 인상하기도 해왔다. 7사는 1999년 11월 이후 주로 석유화학공업협회 폴리프로필렌위원회 기획조사소위원회가 개최될 때를 이용해 부장회를 개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7사는 2000년 1월에 접어들면서 나프타 가격이 상승세에 있는 상황에서 부장회를 열어 같은 해 4월 이후의 나프타 가격의 전망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동시에,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가격 인상에 대해 각 사업자들의 의사의 합치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같은 해 3월 6일 무렵 동경시 치요다구 소재의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의실에 개최된 부장회

에서 이들은 4월 이후의 나프타 가격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가격을 1킬로그램당 10엔씩 인상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고 예상하고 폴리프로필렌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는 데에 각 사의 의견이 일치하여 4월 이후 폴리프로필렌의 수요자전용 판매가격을 1킬로그램당 10엔을 목표로 인상하기로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 후 7사는 2000년 3월 17일 무렵 일본폴리화학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장회에서 각 사의 폴리프로필렌 판매가격 인상에 있어서 사내 진척 상황, 인상액, 실시일 및 대외발표시기 등에 대한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7사는 3월 27일에는 동경의 한 음식점에서 부장회를 열고, 각 사가 고객인 대기업들을 분담하여 책임지고 가격인상 교섭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서 7사는 각각 자신이 책임진 수요자와 가격인상 교섭을 하는 동시에, 4월 이후에도 부장회를 열어 교섭의 진척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7사는 4월 이후 폴리프로필렌의 가격을 인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자간의 공동행위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5월 30일 조사절차를 개시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일본폴리화학을 비롯한 3사는 9월에 각각 이러한 합의로부터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다른 사업자들에게 통지하고 공동행위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낸 공정거

래위원회는 이러한 합의의 이탈로 인해 2000년 이후의 합의는 사실상 소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7사가 1999년의 폴리프로필렌 가격의 인상을 결정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일본내 폴리프로필렌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한 거래제한(법 제2조제6항)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3. 4. 2. 공정거래위원회